자연과학대학 기획위원회 규정

제정 1975. 5.
개정 1989. 7. 7.
1991. 12. 13.
1993. 4. 16.
1997. 12. 12.
2000. 3. 10.
2001. 3. 23.
2003. 3. 20.
2005. 7. 1.
2008. 6. 5.
2010. 12. 10.
2018. 6. 19.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2. 학부(과) 및 전공, 연구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교육, 연구 및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연구 공간에 대한 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연구 및 발전기금의 효율적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 연구용 기자재 도입 및 그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학장,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연구부학장, 기획부학장, 각 학부(과)의 부학부(과)장 및 학장이 위촉한 임명직으로, 20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 교수로 구성한다.
②학장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 1인을 호선하고, 간사위원은 기획부학장이 된다.

제 4 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원회 불참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 5 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6 조 (소위원회) 기획위원회에 장기발전, 공간조정, 기금관리운영, 실험실습기자재 또는 필요에 의하여 임시 또는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소위원회구성) 소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며, 조교수 이상 교수 중 약간의 연구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 8 조 (기금관리 운영 감사) 2인의 조교수 이상 교수를 기금관리 감사로 교수회의에서 선출하여 운영을 감사하게 한다.

제 9 조(소위원회 회의)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연구위원은 소위원회 의결권을 갖는다.

제 10 조 (기타)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자연과학대학기금관리운영위원회규정, 자연과학대학실험실습기자재도입및관리실무위원회규정, 자연과학대학홍보위원회규정을 폐지한다.
10.(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각 위원회의 제반 권리와 의무는 본 위원회가 승계한다.
11.(임명직 위원 임기) 이 규정의 초기 시행에 의하여 임명되는 임명직 위원의 반은 2년, 나머지 반은 4년의 임기를 갖는다.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0.)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19.)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기획·대외협력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6. 7.
개정 2013. 12. 13.
2016. 8. 25.
2018. 6. 19.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자연과학대학 기획·대외협력실(이하 "기획·대외협력실"이라 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기획·대외협력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연과학대학 장기발전 계획 및 구조개선안에 관한 사항
2. 자연과학대학 제반 규정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기획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자연과학대학 시설확충 및 시설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자연과학대학 교육·연구용 기자재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6. 연구활동 진흥을 위한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7. 연구소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자연과학대학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9. 자연과학대학의 국내외 홍보 사항.
10.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업무 협조 및 발전기금 모금 사항.
11. 자연과학대학의 국내외 협력에 대한 사항.
12.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조직) ① 기획·대외협력실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기획부학장을 둔다. 부학장은 자연과학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획·대외협력실에 기획 및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2018. 6. 19.]

④ 기획부학장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시민과학센터(SSOC)의 센터장을 겸임한다.

부 칙 (2012. 6. 7.)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3.)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25.)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19.)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교수업적 관리·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1994. 4. 7 규칙 제928호
1995. 10. 30 규칙 제979호
2001. 7. 6 규칙 제1193호
2002. 2. 21 규칙 제1232호
2003. 6. 11 규칙 제1398호
2009. 8. 7 규칙 제17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업적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수업적관리·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교수업적(이하 “업적”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임교수의 교육, 연구 및 창작, 봉사, 기타 활동실적을 말한다.

제4조(업적관리·평가대상) 업적관리·평가대상은 본교의 전임교수로 한다.

제2장 심의기구

제5조(교수업적관리위원회)① 업적을 관리·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업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교무부처장, 연구부처장과 부교수 이상의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3.6.11., 2009.8.7.]

③ [삭제]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업적관리·평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업적관리 서식 결정에 관한 사항
3. 관련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업적 우수교수의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
5. 업적집 발간계획에 관한 사항
6. 연구보조비 지급원칙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처 연구지원과장이이 된다.[개정 2009.8.7.]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학(원)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① 대학(원) 소속 교수의 업적을 관리·평가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연구소 소속 전임교수에 관한 심의기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원)장, 부학(원)장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학(원)장(부학장이 2인 이상일 때는 교무담당부학장)가 되며,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원)장이 임명한다.

③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업적관리 서식의 기재항목에 관한 사항
2. 업적인정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업적평가의 기준 설정과 심사에 관한 사항
4. 계열별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업적 우수교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6. 연구보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하되, 학(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학(원)에 학문계열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학문계열의 전임교수 중에서 학(원)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학(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업적관리·평가

제9조(관리기간) 업적은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내에 이루어진 업적으로 한다.

제10조(업적결과 제출)① 전임교수는 총장이 정하는 업적관리서식에 따라 학(원)장에게 매년 업적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원)장은 제출된 업적 내용에 대하여 소속 대학(원)위원회로 하여금 업적 기재사항에 대한 합당여부를 확인케 한 후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업적평가)① 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는 교수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단, 평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평가결과는 전임교수의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의 심사, 성과급 연구보조비지급 및 연구교수 선정 등 필요한 경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업적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업적 우수교수 선정)① 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는 탁월한 업적이 있는 교수를 업적 우수교수로 선정하여 총장, 학(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업적은 과거 5년간의 업적으로 한다.

제13조(연구업적집 발간) 총장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업적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수록하여 업적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적 관리·평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92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7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3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5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포상 규정

제정 1999. 6. 22
개정 2000. 3. 10
2001. 3. 23
2002. 3. 15
2004. 3. 29
2005. 7. 1
2006. 6. 9
2007. 9. 14
2007. 12. 6
2014. 12. 19
2017. 3. 8.
2017. 12. 29.
2020. 2. 2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이하 자연대)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과 학생의 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자연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연대 포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및 기준)

1. 본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는 상의 종류는 “우수강의상”, “교육상”, “연구상”, “공로상” 및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으로 한다.
2. 우수강의상은 최근 2개 학기 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자연과학대학 개설교과목의 강의와 교육에 헌신한 전임 및 비전임 교원에게 포상한다. 우수강의상은 5명 내외를 선정할 수 있다.
3. 교육상은 자연과학대학 및 서울대학교 교육과 발전에 공헌한 교원에게 포상하며, 3명 내외를 선정한다.
4. 연구상은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공로상은 우리나라의 과학과 자연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포상하되, 연구상은 3명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자연대 교원으로 한다. 단, 연구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교원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은 당해학기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중 최우수학위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포상한다.

제3조(포상 시기) 우수강의상은 매년 9월, 교육상은 매년 3월, 연구상 및 공로상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한다.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은 전기 및 후기 졸업식 때 포상한다. 단, 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일부만 시상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후보의 추천 및 심사)

1. 포상 후보자의 추천과 피 추천자의 업적 심사를 위하여 자연대 내에 “자연과학대학포상추천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학장이 위촉한다.
3. 교무부학장과 연구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본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부학장으로 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의 교체는 매년 1/3 이내로 한다.

5. 본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로 한다.
6. 후보자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절차와 세부 규정은 본 위원회에서 정한다.
7. 본 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심사 자료와 함께 자연대 학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시상) 시상은 상패, 상금 또는 메달로 할 수 있다.

제6조(서울대학교 교육상 및 학술연구상) 대학본부에서 주관하는 서울대학교 교육상 및 학술연구상의 후보는 포상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1999년도의 제4조에 의한 포상후보자 추천기한은 5월중으로 하며, 제3조의 포상의 실시는 6월중으로 한다.
③ 이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촉되는 1차 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 2년 및 3년으로 한다.
④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⑧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⑨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⑩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⑪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⑫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⑬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시민과학센터 규정

제정 2002. 10. 22
개정 2005. 12. 9
개정 2013. 12. 13
개정 2016. 8. 25
개정 2017. 12. 29
개정 2019. 7. 2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시민과학센터(영문명 SNU Science Outreach Center, 이하 “시민과학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시민과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우리 사회에 과학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각종 과학 나눔 프로그램의 종합 기획 및 추진
2. 청소년 대상 과학 교육 사업의 종합기획 및 추진
3. 자연과학 공개 강연 등 일반 시민 대상 과학 교육 사업의 종합기획 및 추진

제 3 조 (센터장 및 조직)

1. 시민과학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자연과학대학의 기획부학장이 겸임하고, 학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시민과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총괄 한다.
2. 시민과학센터에는 보조연구원(조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시민과학센터에는 행정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4. 시민과학센터에는 시민과학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 과학 나눔 프로그램 기획과 추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5. 시민과학센터는 과학 나눔 프로그램에 따라 소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운영 등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4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 학생부학장 그리고 센터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② 내규의 제정 및 개폐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 5 조 (기타) 이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이나 이 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2002. 10.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8. 25.)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최초 위원은 학장이 임명한다.
③ 시민과학센터는 (구)자연과학대학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확대 개편된 것이다.

부 칙 (2017.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학술정보센터 규정

제정 2002. 10. 22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자연과학대학학술정보센터(이하 “학술정보센터”라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학술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초과학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학술정보의 저장, 공급, 유통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자연과학대학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의 전자정보화 및 이와 관련된 사항
3. 자연과학대학에서 주관하는 교육과목의 전자정보화, 교육지원자료의 전자정보화 및 이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자연과학대학의 정보화와 관련되어 학장이 위임한 사항

제 3 조 (소장) 학술정보센터에 소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조 (조직)

1. 학술정보센터에는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①겸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②객원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학술정보센터에는 정보화 및 행정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1. 학술정보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부학장과 기획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 6 조 (기타) 이 규정에 미비된 사항이나 이 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공간관리 규정

제정 2006. 12. 07.
개정 2014. 03. 06.
개정 2014. 10. 10.
개정 2019. 7. 2.
개정 2020. 9. 17.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모든 공간에 대해 공간의 배정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간의 유형) 자연과학대학 공간(이하 “자연대 공간”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총장의 위임으로 자연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간을 말하며, 학부(과) 기본 공간, 자연대 기본 공간, 자연대 관리 공간으로 구분한다.

제 3 조 (학부(과) 기본 공간) 학부(과)기본공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에 각 학부(과)와 합의하여 작성된 협의문들에 명시된 면적으로 한다.

제 4 조 (자연대 기본 공간) 자연대 기본 공간이라 함은 강의실 공간(학부(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강의실 및 세미나실 제외), 자연대 행정 공간, 협동과정 공간, 기초과학연구원 공간, 자연대 학생 공간을 말한다.

제 5 조 (자연대 관리 공간) 자연대 공간 중 학부(과) 기본 공간과 자연대 기본 공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공간을 자연대 관리 공간으로 한다. 관리와 운영 등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6 조 (기본공간의 이전) 기본공간을 이전할 시 같은 면적으로 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자연대 관리 공간의 배정) 자연대 관리 공간은 공간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자연과학대학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한다. 공간 배정에서 교육 연구 공간은 기타 공간에 우선한다. 세부적인 우선순위 결정 및 특별 공간 배정 등에 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 8 조 (배정 기간) 공간 배정 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자연과학대학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배정 기간 연장 등에 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 9 조 (시설유지개선비와 임대료) 공간의 성격 및 사용 유형에 따라 자연대 관리 공간에는 시설유지개선비 또는 임대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10 조 (비승인 공간) 비승인공간은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철거 통보를 받은 이후 철거되지 않은 공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등 세부 시행 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제 11 조 (사용 및 관리규정 준수) 공간 배정에 따른 사용자는 서울대학교 및 자연과학대학의 제반규정과 지시를 준수한다.

제 12 조 (목적 외 사용 및 전대금지) 당초 목적에만 사용하며, 배정받은 공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는다. 사용공간은 매년 단위로 정기적인 실사를 실시하고 사용 및 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3 조 (원상회복 및 반환) 배정받은 기간이 만료 될 때에는 사용공간을 입주 당시 원상으로 회복 한다. 사용 후에 철거가 어렵거나 철거과정에서 원상이 훼손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4조 (자연대 관리 공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 기타 사용 개시일 및 기간 등 부대조건은 자연대 관리 공간은 공간배정공문으로 정한다.

제15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6. 12.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한시적 제외공간) 리모델링 추진이나 수선중으로 공간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간 면적은 학부(과)의 기본 공간 합산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③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6.)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배정된 공간에 대하여는 제9조 시설유지개선비와 임대료 적용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부 칙 (2019. 7. 2.)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17.)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연과학대학 홍보위원회 규정

제정 2018. 6. 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과학 홍보 및 자료 출판에 관한 사항
2. 자연과학대학 대외협력실 업무에 관한 자문
3. 기타 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의 기획, 실행 및 자문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학장이 위촉한 임명직으로 학부(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10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 교수로 구성한다.

②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부학장이 겸한다.

제4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기타)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8. 6. 19.)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